『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 안 설명

□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이영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나, 실제 보조견 출입 거부에 따른 과태료 및 벌금 부과 실적은 미미한 상황으로, 제재조항에 의한 보조견의 원활한 외부 활동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보조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조 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 여하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인증 사업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